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(김경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49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8일

발 의 자 : 김경우, 경만선, 권영희,
김용석, 김제리, 서윤기,
신정호, 양민규, 이상훈,
이준형, 이호대, 임종국,
장인홍, 채유미, 최 선,
황인구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보건의료인력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인력이나, 이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-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의 시행(‘20년 12월 29일)에 따라 시장 및 보건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적정근로시간의 확보, 야간근로자의 교대 근무 관련 근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이에 동 조례를 개정하여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의 건강권을 보장 하도록 함으로써, 서울시립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서울시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립병원 내 보건의료인력이 적정근로시간의 확보를 통해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5조의4를 신설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4(적정근로시간의 확보) ① 시장과 시립병원의 장은 시립병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, 시립병원의 장은 이를 보호·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5조의4(적정근로시간의 확보)</u></p> <p>① <u>시장과 시립병원의 장은 시립병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, 시립병원의 장은 이를 보호·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
문서번호

2021033000000026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보건복지위원회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채소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1.03.30

회신일 : 2021.03.31

내용문의 : 02-2180-7942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5조의4 (적정근로시간의 확보)를 신설하는 것은 시립병원 내 보건의료인력이 적정근로시간의 확보를 통해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선언적·권고적인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정책조사팀장	이정수
주 무 관	채소영

☎ 02-2180-7942
e-mail : liz1998@seoul.go.kr